참고 4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장학금 수혜 시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동의

본인은 학부 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정부, 민간)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한 것에 동의합니다.

※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본인은 국가장학금(재단 장학금 포함) 신청인으로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는 全 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상의 학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가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단, 주민등록상 연계 정보가 없거나 해외이주 신고자, 이민 출국자 신청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4. 본인은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국가장학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6.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가. 본인은 입학 이후 2년(1~2학년)의 재학기간 동안 성적미달 누적 2회 및 장학생 중간평가(2+2제도) 통과 후 계속지원기준(3학년 이후의 성적으로 산정) 미달 1회, 2년지원 유형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영구 탈락됨을 인지합니다.
   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보고서(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 등)를 성실히 작성 및 제출하며, 기한내 미제출 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다. 본인은 재단의 우수장학생 성장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로 선·후배 장학생 간 교류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3.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 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 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의 반환은 학적변동 등 대학으로부터 환급되는 반환분을 의미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분 상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조항 적용

■ 학자금 목적 외 사용

·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프로그램 참가 포기,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초과수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에 반환)

· 교육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로서 국가우수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수혜한 경우

※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반환금 산정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누적)

5.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습비')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단,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원)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6.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 동시 수혜 불가 동의

본인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과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을 동일학기에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일 학기에 본인의 소속 학점은행제 학적과 본인의 소속 대학 학적으로 동시에 재단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한 개 학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학적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8.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구분	안내
생활비 대출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일시지급 또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실행
기등록자 대출(등록금)	자비로 대학(원)에 선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 대출 실행

〈학자금 범위〉

구분	안내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9.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최종 연락처에 전자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전자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보며,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발신주의)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채무자가 전자문서를 열람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10.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

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1. 고객 개인정보 최신화 관련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재단(개인정보처리자)이 개명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변경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연구장려금 환수 등에 대한 동의(2012년부터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신규 선발된 학생에 해당)

본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한 때에는 연구장려금의 중지 · 환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내용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용**)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3.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기준

① '07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3회 시
② 입학 이후 2년(중간평가(2+2) 학기 전 4~5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취득한 성적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08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적용)
③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④ 중간평가(2+2) 대상자의 평가 학기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⑤ 상기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단, 계속지원기준 미달 횟수는 3학년 이상의 성적취득년도/학기 기준으로 산정
⑥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⑦ 과학기술전문사관 유형으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시
⑧ 편입 등 소속 학교 변경 시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함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 이자+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학과, 초등교육학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
③ 자퇴,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단, 질병·상해·천재지변 및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④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⑤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⑥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유형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및 기수혜 전문역량 개발비 전액 반환
⑦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⑧ 장학생 준수사항(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등) 위반 등으로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장학생 자격 박탈이 결정된 경우
→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장학생 자격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⑨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등 반환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4.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① 자퇴,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단, 질병·상해·천재지변 및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②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하여 '12년 선정 장학생부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장학생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단,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장학생은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상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여야 함

① 일시상환: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
② 분할상환: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 90일 이상 미상환 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 환수자 지정

❑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① 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③ 그 밖에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